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	비고																
<p>I. 대출이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p> <p>1. 자금조정대출</p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p> <p>연 2.0%</p> <p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(현행과 같음)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p> <p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(현행과 같음)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</p>	구분	이율	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p> <p>1. 자금조정대출</p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<p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p> <p>연 2.0%</p> <p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<p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p> <p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<p>I. 대출이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p> <p>1. 자금조정대출</p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p> <p>연 2.0%</p> <p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(현행과 같음)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p> <p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(현행과 같음)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</p>	구분	이율	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p> <p>1. 자금조정대출</p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<p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p> <p>연 2.0%</p> <p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<p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p> <p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<p>- 자금조정대출 금리인하</p>
구분	이율																	
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p> <p>1. 자금조정대출</p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																
<p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p> <p>연 2.0%</p> <p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
<p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p> <p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
구분	이율																	
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p> <p>1. 자금조정대출</p> 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<p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0.5%포인트를 더한 이율</p> <p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p>																	
<p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p> <p>연 2.0%</p> <p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
<p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p> <p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
<p>II. 예금이율</p>	<p>II. 예금이율</p>																	

구 분	이 율	구 분	이 율	
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」 제2조에 따른 예금중</p> <p>1. 당좌예금</p> <p>2. 자금조정예금</p>	<p>연 0%</p> <p>(1)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%포인트를 차감한 이율(최저이율은 0%)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상할 수 있음</p>	<p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」 제2조에 따른 예금중</p> <p>1. 당좌예금</p> <p>2. 자금조정예금</p>	<p>연 0%</p> <p>(1)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0.5%포인트를 차감한 이율(최저이율은 0%)</p> <p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상할 수 있음</p>	<p>- 자금조정예금 금리인상</p>
<p>Ⅲ. 기 타</p> <p>1. 시행일자 : 2023년 1월 13일</p>		<p>Ⅲ. 기 타</p> <p>1. 시행일자 : 2023년 7월 31일</p>		<p>- 시행일자 명시</p>